

瑞山市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1998. 8. 20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8. 21
- 라. 上程日字 : 1998. 8. 28

##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春煥)

### 가. 提案理由

- '98.5.2일 제정 공포된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규정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함.

### 나. 主要骨子

-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함.

-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 작성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써,
- 현행 조례 내용중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110조(예산의 운영등)및 동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서 제출)와 상충된 부분이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관리계획 수립 의회에 제출하고(지방자치법), 출납폐쇄 3월이내 기금 결산서 작성(지방재정법),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며(지방재정법시행령), 기금의 회계 관리하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8 호
의결년월일	1998. 9. 3. (제 회)

##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8. 20

#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1998. 8. 20

제 출 자 : 서산시장

## 1. 제안이유

- 1998. 5. 2일 제정 공포된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규정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기금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함(안 제7호).
- 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8조).
- 라.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8조).

##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의 회계공무원”으로 한다.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수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p> <p>②기금운용관 - - - - -</p> <p>- - - - -</p> <p>- - - - -</p>	<p>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②기금의 회계공무원 - - - - -</p> <p>- - - - -</p> <p>- - - - -</p>
<p>제8조(결산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